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97 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 : 추미애 · 송옥주 · 이수진

한정애 • 강선우 • 정을호

박균택 • 박홍배 • 서미화

박해철 • 이성윤 • 이병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 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.

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.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, 이를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, 군내 지휘·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. 이에,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,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.

한편, 미국은 법(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)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

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,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 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 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군인사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국방부) ① (생 략)	제33조(국방부) 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「군인사법」 제3조제1항제
	1호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
	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
	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
	<u>될 수 없다.</u>
<u>②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⑦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